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관련 문의 : 02-761-4570)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테봉로 114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2층 다산홀
3. 회의목적사항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2)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제 29 기(2025.1.1 ~ 202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정관 변경 비교표(안)
 -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 사내이사 오장석 선임의 건
 - 3-2호 의안 : 사내이사 오성석 선임의 건
 - 3-3호 의안 : 사내이사 오주형 선임의 건
 - 3-4호 의안 : 사내이사 오승예 선임의 건*별첨2.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6 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의 건
*별첨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규조문대비표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 <http://vote.samsungpop.com> 」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3월 21일 ~ 2025년 3월 30일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 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5.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aminologics.co.kr/kor/ir/rule.php>)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51, 301(역삼동, 삼오빌딩3층)
경영관리본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06244)

6. 주주총회 참석자 지참물 안내

- 직접행사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본인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위임장 (상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방합니다.)

당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 양식이 아닌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aminologics.co.kr/kor/ir/rule.php>)에 게시된 별도 위임장 양식으로 작성하신 후 회사

로 우편송부하여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위임장]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상기 대리인에게 ㈜아미노로직스의 제29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인)

2026년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51, 301(역삼동, 삼오빌딩3층)

주 식 회 사 아 미 노 로 직 스

공동대표이사 오 장 석 , 오 성 석 (직인생략)

[별첨1]

□ 정관변경 비교표(안)

구분	현행	개정	개정이유
1	<p>제14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에 의결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신설></p>	<p>제14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에 의결로 소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p>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66) 제343조 제1항 단서,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 반영
2	<p>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신설></p>	<p>제25조(소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체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p>	-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개정사항 및 코스닥협회 표준정관 반영
3	<p>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 및 코스닥협회 표준정관 반영
4	<p>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한다. <신설></p>	<p>제34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중환·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서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 상법 제542조의8 반영
5	<p>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현행과 같음)</p>	- 상법 제542조의8 반영
6	<p>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 상법 제382조의3 개정사항 및 코스닥협회 표준정관 반영
7	<p>제40조(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0조(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상법 제542조의8 반영
8	<p>-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18차개정)</p>	<p>-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4조,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19차 개정)</p>	

※ 별첨2 -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I. 사내이사 후보자의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
오장석	1952.07.10	2년	재선임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現) (주)삼오제약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	-
오성석	1955.04.09	2년	재선임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現) (주)삼오제약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	-
오주형	1981.11.17	2년	재선임	-팬실베니아주립대학교 경제학과 -現) (주)삼오제약 사장	이사회	임원	-
오승애	1985.02.15	2년	재선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現) (주)삼오제약 사장	이사회	임원	-

주식회사 아미노로지스 임원 퇴직금지금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직위	지급기준	지급배수	직위	지급기준	지급배수
사장	재임연수 1년	1배수	회장/부회장	재임연수 1년	4배수
부사장	재임연수 1년	1배수	대표이사	재임연수 1년	3배수
전무이사	재임연수 1년	1배수	사장	재임연수 1년	2배수
상무이사	재임연수 1년	1배수	부사장	재임연수 1년	1.5배수
이사	재임연수 1년	1배수	전무이사	재임연수 1년	1.1배수
			상무이사	재임연수 1년	1.1배수
			상무보	재임연수 1년	1.1배수